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5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행정수요 대응 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직급체계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 (4급, 소방정)를 신설하여 소방 인력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소방령 이하 $\Delta$ 1 → (본청) 소방정+1

나. 신규자원회수시설 적기 건립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자원회수 시설추진반’(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4급)로 격상·확대

- (본청) 4·5급  $\Delta$ 1 → 4급 +1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물재생센터(4명) 및 도로사업소(8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

- (사업소) 5급 이하  $\Delta$ 12 → 전문경력관(고압전기안전관리) +12

라. 정책기획 수요에 적시 대응 등을 위해 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및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별표2, 3)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이내)	5급 (이내)	6급 (이내)	7급 (이내)	8·9급 (이상)	전문경력관 (이내)
현 행	3.5%	14.5%	34.5%	35.5%	10.5%	1.5%
개정(안)	3.5% (-)	16.5% (+2.0%p)	37.0% (+2.5%p)	34.5% (△1.0%p)	7.0% (△3.5%p)	1.5% (-)

[별표2]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이내)	연구사 (이상)	지도관 (이내)	지도사 (이상)
현 행	17%	83%	10%	90%
개정(안)	22% (+5.0%p)	78% (△5.0%p)	20% (+10.0%p)	80% (△10.0%p)

[별표2]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이내)	5급상당 (이내)	6급상당 (이내)	7급상당 (이내)	8급·9급상당 (이상)
비 율	34%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구 분	4급상당 이상 (이내)	5급상당 (이내)	6급상당 (이내)	7급상당 이하 (이상)	
비 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2.0%p)	4%이상 (△2.0%p)	

[별표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이내)	소방령 (이내)	소방경 (이내)	소방위 (이내)	소방장 (이내)	소방교 (이내)	소방사 (이상)
현 행	1%	2.2%	6.3%	7%	15%	33%	35.5%
개정(안)	1%	3% (+0.8%p)	7% (+0.7%p)	8% (+1.0%p)	15%	33%	33% (△2.5%p)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3. 3. 23. ~ 3. 27.) 결과: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총 1건)  
반영으로 별표 4의 표 중 4급란, 4·5급란의 개정사항 추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기획경제전문위원실-801(2023.3.27.)호)  
기획조정실의 분장 규정 중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호)"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개발, 시유재산 총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획조정실에서 현재처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이 요구됨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 (☎2133-6729)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중 일반직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비율란 및 별정직공무원의 구분란, 비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비율	22%이내	78%이상	20%이내	8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4%이상		

별표 3의 표 중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1%이내	3%이내	7%이내	8%이내	15%이내	33%이내	33%이상
----	------	------	------	------	-------	-------	-------

별표 4의 표 중 4급란, 4·5급란, 5급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56	153	19	8	68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48	
----------	--------	--

전문경력관 소계	149	
----------	-----	--

별표 5의 표 중 소방공무원 소방정란 및 소방령 이하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정	32	3		29		
-----	----	---	--	----	--	--

소방령 이하 계	7,396	
----------	-------	--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4.5%이내</td> <td>34.5%이내</td> <td>35.5%이내</td> <td>10.5%이상</td> <td>1.5%이내</td> </tr> </table> <p>2. 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r> <td>비율</td> <td>17%이내</td> <td>83%이상</td> <td>10%이내</td> <td>90%이상</td> </tr> </table> <p>3.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상당 이상</th> <th>5급상당</th> <th>6급상당</th> <th>7급상당</th> <th>8급·9급상당</th> </tr> <tr> <td>비율</td> <td>34%이내</td> <td>50%이내</td> <td>10%이내</td> <td>5%이내</td> <td>1%이상</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0.5%이상	1.5%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7%이내	83%이상	10%이내	9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34%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p>[별표 2] ----- ----- -----</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6.5%이내</td> <td>37.0%이내</td> <td>34.5%이내</td> <td>7.0%이상</td> <td>1.5%이내</td> </tr> </table> <p>2. 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r> <td>비율</td> <td>22%이내</td> <td>78%이상</td> <td>20%이내</td> <td>80%이상</td> </tr> </table> <p>3.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상당 이상</th> <th>5급상당</th> <th>6급상당</th> <th>7급상당 이하</th> </tr> <tr> <td>비율</td> <td>34%이내</td> <td>50%이내</td> <td>12%이내</td> <td>4%이상</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2%이내	78%이상	20%이내	8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4%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0.5%이상	1.5%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7%이내	83%이상	10%이내	9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34%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2%이내	78%이상	20%이내	80%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4%이상																																																																																																																																									
<p>[별표 3] 서울특별시에는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소방정 이상</th> <th>소방령</th> <th>소방경</th> <th>소방위</th> <th>소방장</th> <th>소방교</th> <th>소방사</th> </tr> <tr> <td>비율</td> <td>1%이내</td> <td>2.2%이내</td> <td>6.3%이내</td> <td>7%이내</td> <td>15%이내</td> <td>33%이내</td> <td>35.5%이상</td> </tr> </table>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2.2%이내	6.3%이내	7%이내	15%이내	33%이내	35.5%이상	<p>[별표 3]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소방정 이상</th> <th>소방령</th> <th>소방경</th> <th>소방위</th> <th>소방장</th> <th>소방교</th> <th>소방사</th> </tr> <tr> <td>비율</td> <td>1%이내</td> <td>3.0%이내</td> <td>7.0%이내</td> <td>8%이내</td> <td>15%이내</td> <td>33%이내</td> <td>33%이상</td> </tr> </table>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0%이내	7.0%이내	8%이내	15%이내	33%이내	33%이상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2.2%이내	6.3%이내	7%이내	15%이내	33%이내	35.5%이상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0%이내	7.0%이내	8%이내	15%이내	33%이내	33%이상																																																																																																																																						
<p>[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71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4급</td> <td>255</td> <td>152</td> <td>19</td> <td>8</td> <td>68</td> <td>8</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6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17						(생략)							4급	255	152	19	8	68	8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60						전문경력관 소계	137						(생략)							<p>[별표 4]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71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4급</td> <td>256</td> <td>153</td> <td>19</td> <td>8</td> <td>68</td> <td>8</td> </tr> <tr> <td>4·5급</td> <td>9</td> <td>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4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4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17						(생략)							4급	256	153	19	8	68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48						전문경력관 소계	149						(생략)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17																																																																																																																																												
(생략)																																																																																																																																													
4급	255	152	19	8	68	8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60																																																																																																																																												
전문경력관 소계	137																																																																																																																																												
(생략)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17																																																																																																																																												
(생략)																																																																																																																																													
4급	256	153	19	8	68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48																																																																																																																																												
전문경력관 소계	149																																																																																																																																												
(생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5] ----- ----- -----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소방공무원 계	7,434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31	2		29			소방정	32	3		29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7,397						소방령 이하 계	7,39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총 정원 변동이 없어,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며

직급체계 개편은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